

붙임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법률」 대상 제품

- 의약외품 범위 지정(식약처 고시) 중 다음에 해당 되는 품목

<p>○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 중 다음 각 목의 의약외품</p>
<p>다.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, 모기 등의 구제제, 방지제, 유인살충제</p> <p>※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기피제는 제외</p>
<p>차.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</p>
<p>○ 약사법 제2호제7호 다목에 따른 의약외품 다음 각 목의 의약외품</p>
<p>가.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·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을 구제 또는 방지하여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</p>
<p>1) 살충제</p>
<p>2) 살서제</p>
<p>나.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·소독제제</p>
<p>1) 알코올류, 알데히드, 크레졸,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</p>
<p>2)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</p>